

#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

2023. 8. 29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3년 8월 11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4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28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도시국장 김일호)

- 가. 제안이유
  - 영등포구 여의도동 32번지 “여의도 수정아파트”의 주민제안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6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
  -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  -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
  -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  -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  -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  - 건축물에 관한 계획
  - 용적률계획
  -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

### 3. 위원회 심사방법

- 원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주거사업과장의 PT보고 및 보충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·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함.

### 4. 심사결과: 의견 없음

#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의안 번호	제 21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8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상정이유

영등포구 여의도동 32번지 “여의도 수정아파트”의 주민제안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6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여의도 수정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

1)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

결정 구분	명칭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	여의도동 32번지	-	증) 15,537	15,537	-
<b>시행방법</b>		<b>시행예정시기</b>	<b>사업시행 예정자</b>	<b>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</b>		<b>비고</b>
재건축사업		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	-	증)137세대 (현황:329세대, 계획:466세대)		-

2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 분	면적(m <sup>2</sup> )	비율(%)	비 고
합 계	15,537.0	100.0	
획 지	15,537.0	100.0	

3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가) 용도지역(변경없음)

구 분	면적(m <sup>2</sup> )			비율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15,537.0	-	15,537.0	100.0	
일반상업지역	15,537.0	-	15,537.0	100.0	

나) 용도지역 : 해당없음

4)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가) 교통시설

○ 도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광로	1	27	70	주간선 도로	1,730	국회 의사당앞	시청 예정지앞	일반 도로	-	건고143 ('70.3.26)	
기정	중로	1	131	20	보조간선	1,195	여의동로	여의동로	일반 도로	-	-	

\* ( )는 구역 내 연장임

### 5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구분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관리사무소	획지1	-	증) 75.0	75.0	◦ 10m <sup>2</sup> + (466세대-50세대) x0.05m <sup>2</sup> = 30.8m <sup>2</sup> 이상
"	소 계	"	-	증) 2,309.0	2,309.0	◦ [서울특별시 주택조례] 총량기준 100~1,000세대 : 466세대 x 2.5m <sup>2</sup> x 1.25 = 1,165.0m <sup>2</sup> 이상 ◦ 필수 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(300~500세대) 1. 경로당: 155m <sup>2</sup> 이상 2. 어린이집: 198m <sup>2</sup> 이상 3. 작은도서관: 108m <sup>2</sup> 이상
"	경로당	"	-	증) 400.0	400.0	
"	어린이집	"	-	증) 290.0	290.0	
"	작은도서관	"	-	증) 180.0	180.0	
"	부대시설	"	-	증) 600.0	600.0	
"	어린이놀이터	"	-	증) 766.0	766.0	
"	주민운동시설	"	-	증) 73.0	73.0	

※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, "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"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「건축법」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

### 6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
결정 구분	구역 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m <sup>2</sup> 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변경	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15,537.0	영등포구 여의도동 32번지	3	-	-	3	-	

## 7) 건축물에 관한 계획

### 가) 건축시설계획

구분	구역구분		위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(%)			높이(m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
	명칭	면적(m <sup>2</sup> )				기준	허용	정비계획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규	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15,537.0	여의도동 32번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60% 이하	400	420	477.74 이하	175m 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주택공급계획 : 466세대</li> <li>◦ 건립규모 및 비율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총세대수</th> <th>임대(세대)</th> <th>분양(세대)</th> <th>비율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0m<sup>2</sup> 이하</td> <td>90</td> <td>44</td> <td>46</td> <td>19.3</td> </tr> <tr> <td>60m<sup>2</sup>~85m<sup>2</sup> 이하</td> <td>156</td> <td>5</td> <td>151</td> <td>33.5</td> </tr> <tr> <td>85m<sup>2</sup> 초과</td> <td>220</td> <td>-</td> <td>220</td> <td>47.2</td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466</td> <td>49</td> <td>417</td> <td>100.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	구분	총세대수	임대(세대)	분양(세대)	비율(%)	60m <sup>2</sup> 이하	90	44	46	19.3	60m <sup>2</sup> ~85m <sup>2</sup> 이하	156	5	151	33.5	85m <sup>2</sup> 초과	220	-	220	47.2	계	466	49	417	100.0
구분	총세대수	임대(세대)	분양(세대)	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0m <sup>2</sup> 이하	90	44	46	19.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0m <sup>2</sup> ~85m <sup>2</sup> 이하	156	5	151	33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5m <sup>2</sup> 초과	220	-	220	47.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466	49	417	100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심의완화사항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허용용적률 인센티브(최대 20%이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」 인센티브 적용</li> <li>- 공공보행통로 8.24%, 열린단지 5%, 공개공지 1.8%, 지역기반시설 정비 0.86%, 지역특화 5.49% : 총 21.39% 중 20%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건축한계선: 국제금융로변 : 5m, 국제금융로7길변 : 3m(11층이상은 벽면한계선 3m 추가후퇴) 여의나루로6길변 : 3m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사항	공공보행통로		◦ 구)mbc부지와외의 경계부 6m(대상지 내 3m폭으로 확보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전면공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국제금융로변 5m</li> <li>◦ 국제금융로7길변 : 3m</li> <li>◦ 여의나루로6길변 : 3m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차량출입 불허구간		◦ 국제금융로변 및 국제금융로7길변으로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공개공지		◦ 국제금융로변, 국제금융로7길변 교차부 1,157.69m <sup>2</sup> 계획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은 동시·동일 하게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함

※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

## 나) 용적률계획

구분	산정내용									
	토지이용 계획 (m)	구역면적	획 지	소계	정비기반시설 등 건축물 (공공청사-서울투자청)			건축물(임대주택)		
					계	환산부지	대지지분	계	환산부지	대지지분
	15,537.0	15,537.0	1,690.15	798.94	275.17	523.77	891.21	122.71	768.50	
공공시설부 지 제공면적 (순부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물(공공청사-서울투자청)기부채납 + 건축물(임대주택)기부채납 -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-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 <math>= 798.94m^2 + 891.21m^2 - 0m^2 - 0m^2 = 1,690.15m^2</math> (구역면적대비 10.88%)</li> </ul>									
기준용적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00% 이하</li> <li>420% 이하</li> </ul>									
허용용적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공공보행통로 8.24%, 열린단지 5%, 공개공지 1.8%, 지역기반시설정비 0.86%, 지역특화 5.49% : 총 21.39% 중 20% 적용</li> </ul>									
건축물 기부채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한용적률 상향을 위한 건축물(공공청사-서울투자청) 기부채납 : 연면적 2,500.0m<sup>2</sup></li> <li>상한용적률 상향을 위한 건축물(임대주택) 기부채납 : 59형 39세대, 84형 2세대 = 총 41세대(연면적 : 3,428.1m<sup>2</sup> + 240.0m<sup>2</sup> = 3,668.1m<sup>2</sup>)</li> </ul>									
상한용적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한용적률 = 기준(허용)용적률 X (1 + 1.3 X 가중치 X × α [토지] + 0.7 × α [건축물]) = 420% × (1 + 1.3 × 1 × 0.09072 + 0.7 × 0.02793) = 477.74% 이하 (건축계획용적률 : 477.31%)</li> <li>※ α[토지] = 공공시설제공면적(토지) ÷ 공공시설부지 제공(토지) 후 대지면적  <math>= (523.77m^2 + 768.50m^2) ÷ (15,537m^2 - 523.77m^2 - 768.50m^2) = 0.09072</math></li> <li>α[건축물] = 공공시설제공면적(건축물) ÷ 공공시설부지 제공(토지) 후 대지면적  <math>= (275.17m^2 + 122.71m^2) ÷ (15,537m^2 - 523.77m^2 - 768.50m^2) = 0.02793</math></li> <li>가중치 = 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÷ 사업부지 용적률 = 1</li> </ul>									

## 다)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

### ○ 공공주택 공급면적 산출 근거

계획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주택(공공기여) 건설 : 국계법 제52조의2 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름</li> <li>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[별표3] 제2호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은 400% 이하이며,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경우 완화될 수 있다.</li> <li>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</li> </ul>
------	---

공공주택 (주거용적률 완화) 산출근거	용적률 증가분	◦ 409.98%(계획주거용적률) - 400%(조례상 주거용적률) = 9.98%			
	초과 연면적	◦ 15,537.0m <sup>2</sup> (대지면적) × 9.98% = 1,550.59m <sup>2</sup> 이상			
	공공주택 (주거용적률완화) 면적산출	◦ 증가연면적 (1,550.59m <sup>2</sup> )의 1/2 = 775.30m <sup>2</sup> 이상 ◦ 주거비율완화 임대주택 공급면적 = 세대수 × 공급면적 = (5세대(59m <sup>2</sup> 형) × 87.90m <sup>2</sup> ) + (3세대(84m <sup>2</sup> 형) × 120.00m <sup>2</sup> ) = 8세대 = 775.30m <sup>2</sup>			
	공공주택 (주거용적률완화) 확보 계획	세대규모(m <sup>2</sup> )		세대수	연면적
전용면적	공급면적				
합계		8	799.50m <sup>2</sup>	>775.30m(초과)	
59.90		87.90	5	439.50m <sup>2</sup>	주거용적률 완화(공공기여)에 따른 공공주택
84.90		120.00	3	360.00m <sup>2</sup>	

### 3. 추진경과

- 1976.07.23. : 여의도 수정아파트 준공
- 2002.03.20. :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(D등급) '재건축' 판정
- 2019.01.17. : 정비구역지정 제안접수(입주자대표회의→영등포구청)
- 2019.03.~04. :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 부서협의
- 2022.07.20. : 정비구역지정 제안 보완(입주자대표회의→영등포구청)
- 2022.08~09. :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 27개 부서 협의
- 2023.02.13. : 관련부서(기관)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
- 2023.02~03. :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 35개 부서 재협의
- 2023.05.08. : 관련부서(기관) 재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
- 2023.05.22. : 대공방어협조구역 건축물 높이 초과로 인한 국방부(수방사) 추가협의
- 2023.06.22. : 영등포구청 총괄건축가 자문
- 2023.07.20.~08.21. : 주민공람공고
- 2023.07.27. : 주민설명회 진행



#### 4.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

- 주민설명회: 2023. 07. 27.
- 주민공람
  - 공 고 일: 2023.07.20. ~ 08.21.
  -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
- 관련부서 협의
  - 1차 협의기간: 2022.08.10.~09.26.
  - 2차 협의기간: 2023.02.16.~03.28.

#### 5. 검토의견

금회 제출안건은 영등포구 여의도 수정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한바, 정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함.

##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### 1. 1차 관련부서 협의결과

- 협의기간: 2022.08.10.~09.26
- 협의부서: 서울시(13), 영등포구(10), 유관기관(4)
-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구분		협의 의견	조치계획	비고	
1	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(안) 과의 정합성	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, 공공개발 사업담당관, 도시관리과,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	○ 대상지는 현재 「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」이 수립 중에 있으며 인접하여 「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」이 수립 중에 있어 관련 계획 반영 및 정합성 등 관련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할 것	○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(안)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소관부서(공공개발사업담당관)와 협의하였으며, 인접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(안)의 관련 계획을 반영하여 정합성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함	반영 (첨부1)
2	인접지 개발계획을 고려한 밀도계획	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, 도시계획 상임기획단,	○ 인접지 연계계획(수립중인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(안), 신속통합기획(안) 등)을 고려하여 건축배치, 통경축 및 스카이라인 계획 등 연계 검토 할 것	○ 인접 개발부지(구MBC 등) 계획을 고려하여 건축계획(배치, 통경축 및 스카이라인) 하였음 (구MBC 49층, 공작아파트 49층) (대상지 계획 : 45층 → 49층)	반영 (첨부2)
3	공공주택 반영	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	○ 도심 주택공급 등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반영을 적극 검토하되 입지특성, 입주대상자 등을 고려한 공공주택 유형/ 규모 및 사회 혼합계획 등 반영[소관부서(주택정책과) 협의 결과 반영 할 것	○ 도심 주택공급 등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공공(임대)주택을 계획하였음. ○ 여의도 특성 및 입주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공공(임대)주택의 유형 및 규모를 계획하였으며, 공공(임대)주택과 분양주택은 동일한 생활조건 조성 및 소셜믹스 계획하였음	반영 (첨부3)

구분		협의 의견	조치계획	비고	
4	차량진출입 계획	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, 공공개발 사업담당관,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차량진출입 계획 재검토[상위계획상 차량진출입 불허구간(국제금융로변 진출입 불허) 준수 및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한 단지내 도로는 위치 등 적정성 재검토 할 것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(안)에 따라 차량진출입 변경 계획하였으며,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한 도로는 보행안전을 위해 삭제 계획함.</li> <li>- 당초(안) 차량진출입구간 : 국제금융로, 여의나루로6길</li> <li>- 조치(안) 차량진출입구간 : 여의나루로6길</li> </ul>	반영 (첨부5)
5	DROP ZONE 계획	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DROP ZONE은 공공보도를 점유하지 않고 사유보도를 점유하도록 전용 베이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고 아울러 관제용 CCTV와 음성안내를 설치하여 일반차량 주정차시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시설물 설치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DROP ZONE은 공공보도를 점유하지 않고 사유보도를 점유하도록 전용 베이를 설치하였으며, 관제용 CCTV와 음성안내를 설치하여 일반차량 주정차시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시설물 설치계획하겠음</li> </ul>	반영 (첨부4)
6	도로 계획	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, 도시계획 상임기획단, 공공개발 사업담당관,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비기반시설 도로 기부채납 관련 주택단지 진입도로로 계획된 구간은 기부채납시 제외(순부담률 재산정)하고, 단지 주변 공공보도 등과의 연속성 확보 할 것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초 계획된 주택단지 진입을 위한 도로 기부채납은 삭제하고 공공(임대)주택 및 건축물(육아보육키즈센터)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기여 하였으며, 주변 지역(브라이트여의도)과 보도 등 연속성을 확보하였음</li> </ul>	반영 (첨부5)

## 2. 2차 관련부서 협의결과

- 협의기간: 2023.02.16.~03.28.
- 협의부서: 서울시(18), 영등포구(11), 유관기관(6) 총35
-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구분		협의 의견	조치계획	비고								
1	공공주택 계획 관련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, 공공주택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이 없도록 동일한 생활환경(채광, 조망 등), 외관, 마감 계획을 하여야 하며, 「공공주택 사전검토 신속 추진계획」에 따라 평형, 물량, 단지 배치 등을 적정하게 계획하기 바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의 차별이 없도록 동일한 생활환경(채광, 조망 등), 외관, 마감 계획을 하겠으며, 그 외 자세한 공공주택 관련 사항에 대해 상실히 이행하겠으며, 공공주택 계획은 주택정책과-2993(2023.2.16.) 「공공주택 사전검토 신속 추진 계획」에 따라 평형, 물량, 단지 배치 등을 적정하게 계획하였음</li> </ul>	반영 (첨부1)								
2	공공기여(건축물) 관련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, 도시계획 상임기획단, 공공자산 담당관, 영등포구 보육지원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, 반영 바랍니다.</li> </ul> <p><b>【수요조사 결과】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연번</th> <th>운영주체</th> <th>용도</th> <th>시설규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서울시 (금융투자과)</td> <td>공공청사 (서울투자청)</td> <td>연면적 2,500㎡ 이상 (지상1~3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울러, 서울시 주관부서(공동주택지원과)에서는 공공기여(수요조사 결과 반영 등)적정성 검토사항이 계획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 바라며, 향후 위원회 심의(자문)시, 기 화신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적합여부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	연번	운영주체	용도	시설규모	1	서울시 (금융투자과)	공공청사 (서울투자청)	연면적 2,500㎡ 이상 (지상1~3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는 수요조사결과 기존 육아 보육키즈센터를 공공청사(서울투자청)으로 변경 하였으며, 시설의 규모(연면적, 계획층수 등) 및 배치는 금융투자과와 협의하여 계획하였음</li> </ul>	반영 (첨부2)
연번	운영주체	용도	시설규모									
1	서울시 (금융투자과)	공공청사 (서울투자청)	연면적 2,500㎡ 이상 (지상1~3층)									
3	건축한계선 등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, 영등포구 도시계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여의나루로6길 및 국제금융로7길에 대한 도로 계획은 인근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, 건축선 등에 대하여는 「한강변 관리 기본계획」에 적합하게 수립 바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로 여의나루로6길 및 국제금융로7길은 인근 재건축 추진 아파트(삼부아파트, 한양아파트)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계획하였으며, 「한강변 관리 기본계획」에 따라 건축선후퇴 3m를 지정함</li> </ul>	반영 (첨부3)								

구분		협의 의견	조치계획	비고	
4	허용용적률 인센티브	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허용용적률계획 관련 '친환경 항목(8%)은「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」(22.11.)상 관련 법적 의무 기준 초과 비율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바, 이와 정합 되도록 조정 필요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정(23.03.23)에 따라 정합되도록 조정 및 적용하였음</li> </ul>	반영 (첨부4)
5	교통처리계획	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, 영등포구 교통행정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측 도로(국제금융로)의 횡단 구성계획(4차로)은 연접한 브라이튼여의도 해당 구간의 횡단구성 계획과 연속되도록 조정 검토 필요.</li> <li>○ 동측 도로(여의나루로6길)의 횡단 구성계획 관련 현행 거주자우선 주차면은 연접한 브라이튼여의도 해당 구간의 횡단구성계획과 연속되도록 계획 하고, 삭제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측 도로(국제금융로)의 횡단 구성계획(4차로)은 연접한 브라이튼여의도 해당 구간의 횡단구성 계획과 연속되도록 조정 검토하였음</li> <li>○ 기존 영등포 경찰서의 협의 의견(재건축 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북측 여의나루로6길(폭 12m) 노상 주차계획을 제거하길 바람)에 따라 노상주차구획 제거하여 계획함</li> </ul>	반영 (첨부5)
6	공공보행통로	서울시 도시관리과, 영등포구 주택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 MBC부지와 연접한 통행로는 향후에도 보행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, 동일한 위치에 계획 중인 공공보행통로는 대상지 내에서 현 폭원 이상 확보 및 유지 검토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위계획 「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(안)」 상 공공보행통로 계획은 사업대상지 3m와 브라이튼 오피스텔 3m, 총 6m 계획 되어있었으며, 이에 따라 수정파트 재건축계획의 경우 3m 공공보행통로로 계획함</li> </ul>	반영 (첨부6)
7	DROP ZONE 계획	영등포구 교통행정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Drop존은 사업지 외부도로변에 베이형으로 조성하고 일반 차량의 주차가 불가하도록 CCTV 및 음성안내 등 관제시스템을 설치, 관리실에서 통제 되도록 할 것 (현 계획대로 아파트 내부에 Drop존이 조성되면 외부차량 금지로 인해 결국 외부도로변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지거나 추후 구청측으로 시설조성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외부도로변에 설치·운영이 현실적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[사업지 외부가로에 베이형으로 Drop존 추가 조성하였으며, 일반차량의 주차가 불가하도록 CCTV 및 음성안내 등 관제시스템을 설치, 관리실에서 통제되도록 계획함</li> </ul>	반영 (첨부7)